

공동선언

이 협정이 2006년 9월 30일 후에 발효하는 경우, 부속서 IV·V 및 VI의 관세인하 및 철폐의 일정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.

가. 최초의 관세인하는 이 협정의 발효시에 발생한다. 그리고

나. 부속서 IV·V 및 VI에 규정된 관세철폐를 위한 후속 단계는 1년씩 연기된다.